

포상규정

1986. 4.21. 제정

2002. 2.20. 일부개정

2007. 1.23. 일부개정

2013. 6. 1. 전부개정

2021. 9. 1. 일부개정

2023. 1. 1. 일부개정

<정책기획팀, 교무팀, 인력개발팀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함)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의 권한과 대상) ① 본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포상의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.

②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교 소속의 교원 또는 직원
2. 본교 소속의 기관 또는 부서
3. 본교에 기여한 외부의 사람 또는 기관

제3조(포상의 사유) 포상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교 발전에 기여하는 행위
2. 본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행위

제4조(포상의 방법) 포상의 방법으로는 상장 또는 표창장에 부가하여 부상(기념품 또는 상금)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중복포상의 금지)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포상을 하지 않는다.

제6조(포상의 시기) 포상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기포상: 본교 개교기념일 등 특정일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포상
2. 특별포상: 필요한 때에 총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포상

제7조(포상의 기준) ① 포상을 함에 있어서는 포상의 목적 또는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포상의 목적 또는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포상을 하지 않는다.

제8조(주관부서) 포상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: <삭제 2021. 9. 1.>
 - 가. 석탑강의상: 교무처 <신설 2021. 9. 1.>
 - 나. 석탑연구상: 연구처 <신설 2021. 9. 1.>
 - 다. 석탑기술상: 산학협력단 <신설 2021. 9. 1.>
 - 라. 석탑국제협력상: 국제처 <신설 2021. 9. 1.>
 - 마. 우수연구교수상: 연구처 <신설 2023. 1. 1.>
 - 바. 교원특별포상: 교무처 <신설 2021. 9. 1., 마목에서 이동 2023. 1. 1.>
2. 직원: 총무처
3. 의료원 소속 직원: 의료원
4. 본교 소속의 기관·부서: 기획예산처
5. 외부의 사람 또는 기관: 대외협력처

제9조(포상후보자 추천) ① 부서장 또는 기관장 및 제8조에 따른 주관 부서장은 포상후보자를 추천한다. <개정 2021. 9. 1.>

② 포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[별지서식 1: 포상추천서]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

다음 각 호가 정하는 부서장 또는 기관장에게 인비로 제출한다. 다만, 제8조제1호의 가목 내지 마목과 관련된 포상후보자 추천은 포상후보자 명단 제출 공문으로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대체한다. <개정 2021. 9. 1., 2023. 1. 1.>

1. 교원: 교무처장
2. 직원: 총무처장
3. 의료원 소속 직원: 의료원장
4.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기관: 기획예산처장
5. 외부의 사람 또는 기관: 대외협력처장

제10조(포상후보자에 대한 심사) ① 포상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최종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구에서 담당한다.

1. 교원: 교원인사위원회
2. 직원: 직원인사위원회
3. 의료원 소속 직원: 의료원인사위원회
4. 본교 소속의 부서 또는 기관: 처장회의
5. 외부의 사람 또는 기관: 처장회의

② 포상후보자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구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위원회는 심사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11조(시행세칙 또는 지침)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행세칙 또는 주관부서의 내부지침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6년 4월 2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2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전면개정)

부 칙 (2021. 9. 1.)

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8조제1호 개정 및 가목 내지 마목 신설, 제9조제1항 개정, 제9조제2항 개정)

부 칙 (2023. 1. 1.)

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8조제1호마목 신설, 제9조제2항 개정)

포상 추천서				
포 상 후보자	개인() 기관·부서()	성 명		생년월일
		소 속		직 위
포상의 종 류	기관·부서명			
추천요지				
공적사항 개 요	<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적조서 참조>			
기 타 참고사항				
<p>본교 「포상 규정」에 따라 위 사람/기관을 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0px;">추천자:</p> <p style="margin-left: 100px;">고려대학교 총장 귀하</p>				